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내부관리계획 교육

1. CCTV 설치 목적

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2. CCTV 설치·운영 관리자

관리책임자	대표자 (시설장)
김재환 심예은 신민정	이복환

* CCTV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,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.

3. CCTV 설치장소

침실	24대	46대
공용공간	식당1대, 물리치료 1대, 프로그램실 5대, 엘리베이터1대, 복도5대, (외부공간 6대) 등등	

4.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

1) 24시간 상시촬영되고 있으며 보관기간은 60일로 영상정보는 60일 이후에 자동삭제된다.

2)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사무실 이다.

5. CCTV 열람가능사유

1)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2)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

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3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
4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5)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6. 열람요청시 제출서류

1)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서식에(CCTV 영상물 열람 혹은 존재확인 요청서)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함.

2)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7. 운영자의 금지행위

1)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
2)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
3)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